

1. 개정이유

교정사고는 형의 집행·구금·교정·교화 등 교정행정의 본래 목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, 더 나아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, 법무부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교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

한편, 교정종합상황실 업무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 설치·운영은 법무부 훈령(「교정종합상황실 운영 규정」)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현실임

이에 교정종합상황실 설치·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사고, 재난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·대응 체계 구축을 뒷받침하도록 함

2. 주요내용

가. “교정사고”의 개념을 정의하고, 교정종합상황실의 기능·업무 범위 등을 명시하여 설치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24조제1항)

나. 교정종합상황실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의 근거 마련함(안 제24조제2항)

다. 안 제24조제1항에서 “교정사고”의 개념을 정의하였으므로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함(안 제43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2025. 2. 18. ~ 3. 31.(예정)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도관직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도관직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제5절(제24조의2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절 교정종합상황실

제24조의2(교정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)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사고(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, 수용자의 자살·도주·폭행·소란, 그 밖에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재난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상황대응을 하기 위하여 교정 종합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교정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교정사고와 재난상황에 관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·접수·처리
2. 정보의 분석·판단·전파와 공유·이관
3. 상황관리, 현장 지휘·조치·조정·통제 및 공동대응 등

③ 교정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

제43조제2항 중 “수용자의 도주 등 교정사고”를 “교정사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	<u>제5절 교정종합상황실</u> <u>제24조의2(교정종합상황실의 설치</u> <u>· 운영) ① 법무부장관은 교정</u> <u>사고(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</u> <u>재, 수용자의 자살·도주·폭행</u> <u>· 소란, 그 밖에 사람의 생명·</u> <u>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</u> <u>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</u> <u>고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재</u> <u>난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상황</u> <u>대응을 하기 위하여 교정종합상</u> <u>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u> <u>② 교정종합상황실은 다음 각</u> <u>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u> <u>1. 교정사고와 재난상황에 관한</u> <u>정보의 신속한 수집·접수·</u> <u>처리</u> <u>2. 정보의 분석·판단·전파와</u> <u>공유·이관</u> <u>3. 상황관리, 현장 지휘·조치·</u> <u>조정·통제 및 공동대응 등</u> <u>③ 교정종합상황실의 설치·운</u> <u>영을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</u> <u>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.</u>

제43조(교정시설의 경계 등) ① (생 략)	제43조(교정시설의 경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교정직교도관이 제1항에 따라 경계 또는 순찰 근무를 하는 경우 에는 그의 시선 내에 있는 구역 · 시설 등을 감시하여 <u>수용자의</u> <u>도주 등 교정사고</u> , 수용자의 징벌 대상행위,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예방·단속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교정사고</u> ,----- ----- -----.